

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 게시일자 : 2015-12-0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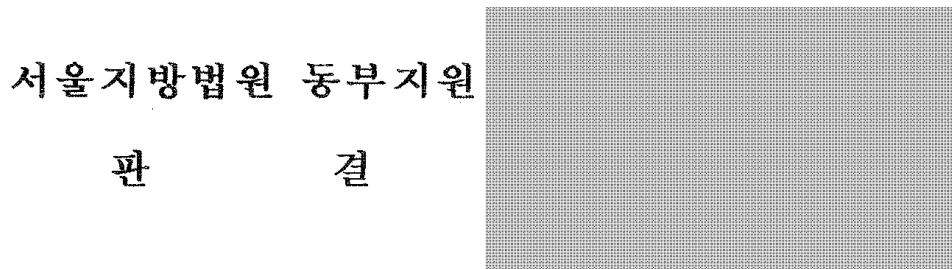
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

판 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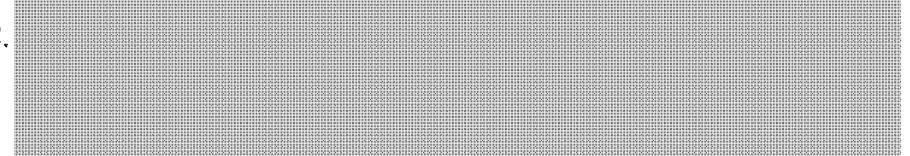
사 건 97가소66329 손해배상(기)

원 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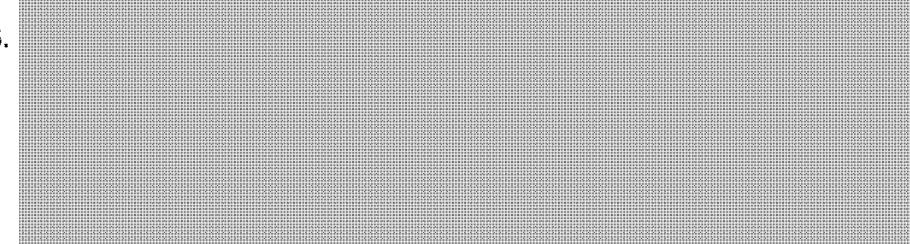
1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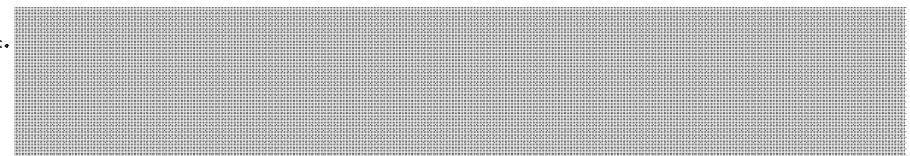
2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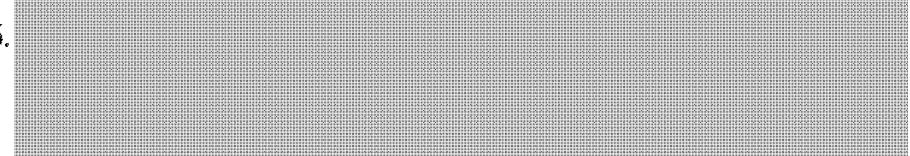
3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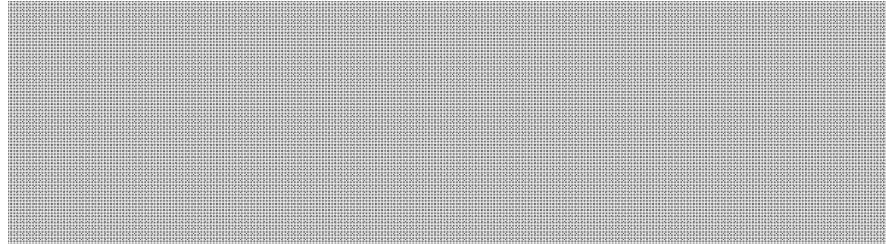
4.



5.



6. 유한회사 한국타코닉



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 게시일자 : 2015-12-04

피 고

신한영주택관리 주식회사

변 론 종 결

1997. 10. 8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 [REDACTED], [REDACTED], [REDACTED]에게 각 474,000원, 원고

[REDACTED] [REDACTED]에게 각 294,000원, 원고 유한회사 한국타코닉

에게 486,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1997. 4. 12.부터 1997.

10. 29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는 연 25%의
각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지급하라.

2.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3.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들의, 나머지는 피고의
각 부담으로 한다.
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 [REDACTED], [REDACTED], [REDACTED]에게 각 990,000원, 원고

[REDACTED], [REDACTED]에게 각 690,000원, 원고 유한회사 한국타코닉에게

1,010,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1997. 4. 12.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%,
그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는 연 2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도난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피고측이 무인카메라나 차량차단

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 게시일자 : 2015-12-04

기 설치 등을 건의했으나 입주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신의칙상 피고 책임액에서 40% 공제한다.

2.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.

1997. 10. 29.

판 사 변 환 철

